

부산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32502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7. 4. 18.

판결 선고2017. 5. 16.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4,332원 및 그 중 20,389,212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2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3. 11. 20. 피고 A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4. 11. 20.(이후 보증기한이 2016. 11. 18.까지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비용을 구상할 수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6. 1.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6. 3. 부산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 원금 20,000,000원, 약정이자 389,212원 합계 20,389,2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상환받을 채권보전비용은 575,120원이다.

라. 피고 B은 2016. 3. 3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9. 23. 이 사건 부동산이 218,98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6. 11. 22. 배당할 금액 215,700,466원을 부산진구에게 233,150원, 하나케이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152,400,070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28,465,708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47,960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게 2,891,908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게 9,038,054원, 피고 C에게 22,523,616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만, 원고가 피고 C이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피고 C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부산진구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4,332원(= 대위변제금 20,389,212원
+ 채권보전비용 575,1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389,2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6.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6. 12.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16. 1. 21.부터 이자를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C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 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10. 30.경 피고 A이 36,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11. 3.까지 16,000,000원, 2015. 12. 30.까지 2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 A, B에게 36,000,000원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피고 A, B이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아 2016. 3. 30.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을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C과 피고 A, B은 같은 교회 교인들로서 피고 C은 피고 A,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 A, B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말미암아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있어 수익자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 대한민국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 버렸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써 피고 C은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2,523,616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피고 C이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금액인 22,523,616원을 초과하므로, 위 배당금출급채권 전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동한

별지